

해외 금융재산 세무신고 요령

해외에 금융재산이 있다면,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시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자.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세무전문위원)
taxatt@hanafn.com

▶ **학력·자격증**
고려대 MBA(회계학) / 세무사(제36회)
▶ **경력**
2002년부터 VIP 손님 상담
(전서울디지털대학(SDU) 교양학부 강사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출간
(알고싶은 부자들의 상담사례집) 출간)
▶ **현재 활동**
KBS 1TV 출연 및 조선일보 기고 중

지난 5월은 2015년에 발생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기간이었다. 세금 신고는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해외 금융재산 신고는 특별히 수익이 발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놓친다면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외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했다

고 하더라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WHO_ 누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통상 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계좌 등의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의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이 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1조의2)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2015년 신고분은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특히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자로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신고의무 면제자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는 없다. 외국인 거주자 중에서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둘째, 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다. 하지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2015년 신고분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셋째,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제외한다.

WHAT_ 어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나?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첫째, 해외 금융자산 기준금액의 판정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원화로 환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

다. 예를 들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미화 15억원이 A계좌에 예치되었다가 6월 10일에 인출되었고, 7월 말 기준으로 12억원이 B계좌에 있었다면, A계좌는 월중예원화 10억원이 초과되더라도 6월 말 기준으로 잔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B계좌는 월말 기준으로 원화 10억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된다.

둘째, 해외 공동예금 계좌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작성하며, 공동명의자 각자가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셋째,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동시에 있을 경우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고려대상이 아니고, 해외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WHEN_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못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 하나?

신고대상자의 경우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신고 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산정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2015년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2016년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4%	해당 금액의 10%
50억원 이하	8,0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7%	2억원 +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2억9,000만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10%	6억5,000만원 + 초과금액의 20%

재신고 시 과태료 산정기준

수정(기한 후)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금액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2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10%

소하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으로 부과 산정된다.

둘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못하면 재차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까.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에 한하여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10~70%까지 경감될 수는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감되지 않는다.

한편, 과태료 부과권 역시 부과 제척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HOW_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에는 어떤 서류를 작성하나?

신고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②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사진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세금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클릭하여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ㅎ



해외금융계좌 신고 서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4.6.>

신고대상 연도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구분 [] 정기 [] 수정 [] 기한 후	[] 거 주 자 [] 내국법인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 (법인명) (영문) KIM GUKSE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④ 주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8	③ 전화번호 010-5678-1234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④ 총 신고계좌 수 2 개	보유계좌 잔액의 연동 미일 일일의 최고금액 ⑤ 기준일 2014. 1. 31.	⑥ 금액 1,110,000,000원
-------------------	--	------------------------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① 계좌 관할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② 금융회사명 BANK OF AMERICA	③ 계좌종류 예금
④ 계좌번호 987654321	⑤ 표시 통화 USD	⑥ 현지기업 고유번호
⑦ 계좌 명의자 KIM GUKSE, LEE SUNGSIL	⑧ 개설일 2010. 01. 10.	⑨ 해지일 2014. 12. 31.
⑩ 기준일 잔액 (외화) 500,000 (원화) 561,000,000	⑪ 개설일 2014. 12. 31.	⑫ 해지일 2014. 12. 31.
⑬ 금융회사 소재지 USA CALIFORNIA	⑭ 지역(주/아, 성(영) 등) SAN FRANCISCO	⑮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555 CALIFORNIA STREET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고대상 연도 2015년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	-------------------	---------------------------------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단위: 현지 통화, 원)	
① 계좌 관할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② 금융회사명 COMMONWEALTH BANK	③ 계좌 종류 적금
④ 계좌번호 345678912	⑤ 표시 통화 AUD	⑥ 현지기업 고유번호
⑦ 계좌 명의자 KIM GUKSE	⑧ 개설일 2014. 1. 10.	⑨ 해지일
⑩ 기준일 잔액 (외화) 500,000 (원화) 598,000,000	⑪ 개설일 2014. 1. 10.	⑫ 해지일
⑬ 금융회사 소재지 AUSTRALIA NEW SOUTH WALES	⑭ 지역(주/아, 성(영) 등) SYDNEY	⑮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691 GEORGE STREET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고대상 연도 2015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	-----------------------	---------------------------------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1234567	(단위: 현지 통화, 원)
① 보유계좌 일련번호 1	② 계좌 관할자 유형 [] 개인 [] 법인 [] 기타
③ 관련자 성명 (W2(영) 주소 (소재지)) 이성실	④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20629-2123456
⑤ 관련자 주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8	⑥ 전화번호 010-1234-1234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예시

Summary

- ① WHO : 한국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 ② WHAT :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작년 매월 말 기준으로 원화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 ③ WHEN : 신고대상자는 올해 6월 말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 ④ HOW : 신고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전자신고 가능)